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조성금 부과 이의신청 근거 법률 상향 등 이의신청에
대한 규정 정비〉

■ 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2216220호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 성 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조성금 부과 이의신청 근거 법률 상향 등 이의신청에 대한 규정 정비	2
[참 고 자 료]	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 부
2. 제 안 일 : 2026. 1. 22.
3. 회 부 일 : 2026. 1.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자원조성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그 신청기간을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의 신청기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그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조성금 부과 이의신청 근거 법률 상향 등 이의신청에 대한 규정 정비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성금 부과 이의신청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이의신청의 신청기간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44조의2(이의신청) ①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받은 자는 해당 조성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신청기간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조성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부과·징수의 대상, 면제 사유, 부과기준 등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¹⁾하고 있으나, 조성금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의 근거 및 이의신청 제기기간은 대통령령²⁾에서 정하고

1)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조성금) ①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금액(이하 “조성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 5. (삭 제)

6.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원상회복조치의 명령대상에서 제외된 자

7. 제38조제2항에 따른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8. 제39조제3항에 따른 부수어획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9.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중 관계 행정기관의 동의 등을 받아 행하는 공유수면의 준설, 준설토를 버리는 장소의 조성,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 행위 허가를 받은 자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의제하는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성금을 면제한다.

1., 3., 5. 삭제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신·재생에너지발전을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를 받거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③ 행정관청은 제1항제10호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조성금의 부과·징수의 대상이 된 자가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경비를 별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과할 조성금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할 때에는 초과량 및 부수어획량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10호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에 따른 면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조성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는 조성금의 산정기준·감액기준·부과절차 및 부과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조성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해당 조성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조성금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2)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8조(조성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③ 제1항에 따라 부과된 조성금은 부과일부터 60일 이내의

있음.

< 수산자원 조성금 제도 현황 >

☐ (목적)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 확보

* 인공어초, 바다목장 및 바다숲 설치, 수산종자의 방류, 해양환경의 개선 및 친환경 수산 생물 산란장 조성 등 수산자원 조성에 필요한 사업

**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제7항에 따라 조성금은 수산자원조성사업 용도로만 사용 가능

☐ (부과 요건)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제1항제6호~제10호

6.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원상회복조치의 명령대상에서 제외된 자
7. 제38조제2항에 따른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8. 제39조제3항에 따른 부수어획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9.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중 관계 행정기관의 동의 등을 받아 행하는 공유수면의 준설, 준설토를 버리는 장소의 조성,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 행위 허가를 받은 자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의제하는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 이의신청 제도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정식의 행정쟁송 전에 제기하는 간이한 권리구제 절차라고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제도는 이미 처분 당시 행정절차에서 확보된 자료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해당 사안을 가장 잘 아는 행정청이 다시 한번 사안을 검토·판단하는 절차이므로 비교적 짧은 기간에 행정청의 결정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음³⁾.

납부기한까지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조성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행정관청은 조성금 납부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조성금을 부과받은 자는 그 부과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한국행정법학회, 「행정기본법상 국민권리구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연구」 법제처(2024.11.), p.9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 기간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을 신청을 받은 날로 14일 이내(10일 범위 연장가능)로 정하고 있으며⁴⁾, 이의신청에 대해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본법」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함.

□ 그런데, 현행법은 법률에서 이의신청의 근거 및 신청기간·결정기간 등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대통령령에서 이의신청 제기기간(납부고지서 받은 날로 90일 이내)만 정하고 있는바,

「행정기본법」에 따른 기간(30일 이내)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간(90일 이내)이 상이하여 국민들의 권리구제 기간에 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4)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의 처분(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으로 한다)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제2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이하 생략)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자원조성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그 신청기간을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의 신청기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그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로 이해됨.

□ 다만, 이의신청 제기기간의 대통령령 위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이의신청기간을 「행정기본법」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이의신청은 행정쟁송 전에 제기할 수 있는 행정청에 대한 사전적 불복절차로서 이의신청기간은 국민의 권리구제에 있어 필수적인 사항이며, 대통령령에 따라 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으므로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이의신청기간을 「행정기본법」과 다르게 정할 경우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해양수산부는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개정안은 입법필요성이 있으며, 조성금 과다 징수에 따른 이의신청 제기기간은 납부자의 이의신청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기 위해 90일의 기간을 규정한 것이라는 설명임(「지방세기본법」 및 「관세법」 등 유사입법례 참고)⁵⁾.

5) 참고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음. 발의하려는 의안에 국가 및

< 유사입법례 >

【지방세기본법】

제90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군·구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⑤ 제1항제2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2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419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반요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지만, 재정소요와 관련이 없는 의안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추계요구서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국회예산정책처, 「2021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2021. p.30.).

참고 1

수산자원조성금 부과·징수 현황

□ 연도별 부과·징수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과		징수		차이 ^{주1)}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	(B/A)
합계	69,150	24,037	64,279	23,301	1,871	736	96.9%
2024	1,854	637	1,742	602	112	35	94.5%
2023	5,024	766	4,754	737	270	29	96.3%
2022	2,150	1,101	2,104	1,084	46	17	98.5%
2021	1,102	647	1,087	635	15	12	98.1%
2020	890	745	896	745	-6	0	100%
2019	1,739	554	1,747	549	-8	5	99.1
2018	5,589	953	5,171	905	418	48	95.0
2017	2,369	943	2,337	937	32	6	99.4
2016	982	550	968	527	14	23	95.8
2015이전	47,451	17,141	46,473	16,580	978	561	96.7

주1) 부과년도(연말)와 징수년도(연초) 및 미납액 등에 따른 부과·징수 차 발생

* '25년 부과·징수 실적은 지자체 작성중